

진행 순서

- ◆ 개 회
- ◆ 위원장 인사
- ◆ 여성가족위 위원 소개
- ◆ 단체 소개
- ◆ 참석자 의견개진(식사 진행)
- ◆ 위원장 마무리 인사
- ◆ 산 회
- ◆ 기념촬영

여성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참석자 명단

국회여성가족위원회

2012. 9. 12 (가나다순)

연번	단 체 명	대 표	참석자		비 고
			직 위	성 명	
1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한영애 우순덕	대 표	우순덕	
2	여성긴급전화1366 전국협의회	김명숙	회 장	김명숙	1224(407) / 여성긴급전화 중앙관리소
3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김은희	대 표	김은희	
4	유엔인권정책센터	신혜수	대 표	신혜수	
5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유숙영	경기권역대표	최영수	대리참석
6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고미경	대 표	고미경	
7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현숙 김미순	대 표	김미순	
8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명숙	대 표	유성애	
9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이낙영	대 표	이낙영	
10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수혜	회 장	전수혜	
11	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김경희 김금옥	상임대표	권미혁	
12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박봉정숙	대 표	김인숙	
1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김성옥	중앙회장	김성옥	
14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부대표	임윤옥	대리참석
15	한국여자의사회	박인숙	부회장	조필자	대리참석
16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강은숙	상임대표	정춘숙	
17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강교자	사무국장	원경록	대리참석
18	한국여성재단	조 형	사무국장	명진숙	대리참석
19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 장	김은주	
2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엽	사무처장	강성의	대리참석

청소년관련 단체

(가나다순)

연번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1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구해영	강남구 강남대로 354 혜천빌딩 15층	02-6259-1232
2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주) 미래청년인식	김교식	종로구 통의동 7-25	02-733-7587
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박철원	금천구 가산동 470-8 KCC엘츠벨리 602, 603호	02-585-0098
4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윤종필	중구 을지로5가 274-40 석광빌딩 305호	02-747-1388
5	탁틴내일	최영희	서대문구 창천동 114-9	02-338-7480
6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김종희 (대행)	종로구 을지로 47	02-733-6801
7	한국스카우트연맹	함종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02-6335-2000
8	한국시민자원봉사회청소년봉사단연맹	유주영	강남구 삼성동 149-29 대모빌딩 4층	02-2663-4163
9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차광선	강서구 금남화로 234(방화3동 801) 국제청소년센터 2층	02-2667-0471
10	한국청소년보호연맹	장동근	강남구 도곡동 419-4	02-3462-1318
11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이희청	성북구 안암동5가 134-41 3층	02-924-3377
12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이현숙	서대문구 신촌로7길 18 4층	02-3144-1223
1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정국	종로구 이화동 97-4 대동빌딩 5층	02-766-9363
14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조순태	종로구 평동 20-9 2층	02-403-9171
15	한국청소년연맹	황우여	동작구 신대방동 395	02-841-9291
16	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안희옥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 1층	02-576-7799
17	한중문화청소년협회(미래숲)	권병현	종로구 무악동 82 현대프라자 201호	02-737-0917

가족관련 단체

(가나다순)

연번	단 체 명	대 표	주 소	전화번호
1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기영	강남구 역삼동 707-38 테헤란오피스 빌딩 1104호	02-6354-0515
2	결혼이민가족지원연대	전만길 강승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37-2	043-733-1915
3	애란원(미혼모자시설)	한상순	서대문구 대신동 127-20	02-393-4720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영등포구 국회대로76가길 6층	02-780-5688
5	한국가족상담협회	오제은	용산구 용산동5가 24 용산파크타워 103동 1003호	02-584-0870
6	한국다문화가족지원연대	손선환	광진구 자양4동 10-29 옥동빌딩 2층	02-468-3300
7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경화	마포구 연남동 255-33 새로나빌라 B2	02-2682-3376
8	한국여성복지연합회	김상림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 관 405호	02-712-0713
9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송파구 신천동 11-10 잠실아이스퀘 이스 1017호	02-425-6911
1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고선주	마포구 합정동 426-1 웰빙센터 8층	02-3140-2260
11	서울건강가정지원센터	송향섭	중구 소파로4길 6	02-318-0227
12	부산건강가정지원센터	김현희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56	051-330-3470
13	대전건강가정지원센터	박성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767	042-252-9989
14	울산건강가정지원센터	정민자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74-3136
15	경남건강가정지원센터	하성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생활과학관 2층	055-266-8335

‘계약혼’의 법제화에 관한 구상

미래포럼 사무국

1. 배경

-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미래포럼의 사회문화적 정책 제언 작업의 일환으로 제기
-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법으로 가족친화제도 시행 5년, 비혼화 시대에 기혼 가족 중심의 정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 노정
- 싱글맘, 미혼모의 실질적 증가에 따른 혼외출산 허용 및 혼외자의 법·사회적 보호의 필요성 제기
- 현행 법률혼 제도와 가부장적 가족문화로 인한 결혼기피 경향(비혼화, 만혼화) 증가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혼인의 유연한 제도적 모델 개발 필요

2. 목적

- 혼인과 출산의 사회·문화·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 현실적 변화와 미래 요구에 부합하는 가족 개념 및 형태의 확대

3. 내용

□ 현행 법률혼의 제도와 관행에 따른 사회적 문제

- 미혼 남녀의 급증
 - 여성 결혼기피의 이유: 일-가정 양립 난제, 시가의 부담 & 마찰 등
- 과도한 혼례비용 & 양가(父系 家)의 재력과시/권위 경쟁/마찰 (→불안정한 시작)
- 부부관계 중심의 가족문화 약화, 부모-자녀 관계 기반의 책무 중심, 개입 강화
- 미혼모가정의 빈곤화 & 사회적 낙인(본인 및 자녀) 효과

□ 사회적 변화

- 결혼 상대의 결정과정에서 가족, 친족보다 당사자 의견 존중 : 연애혼>중매 등
- 호주제 폐지 → 父系 家보다 개인 중시/자율독립권 강화 = 가부장주의 약화
- 호적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재혼의 사실혼 증가 및 노년층 재혼 증가
- 결혼 예식과 가족 간 결합으로서 혼인 의미의 축소 지향 확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연구성과 발표회’(2012)
결혼식은 당사자와 증인만 참석하는 의식(53.4%), 혼인신고만 하게 될 것(42.8%)
독신에 찬성(61.1%),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데 찬성(50.6%)

※ 계약혼 모델 (contract union)

- 계약혼 제도의 기본 모형 정리 → 전문가 연구&토론 → 2012.12.27 제안
- 비교: 국내 법률혼, 사실혼, 동거 등
- 국의 PACS 등

□ 기본 모형

1) 당사자 간 합의와 계약, 신고

계약내용: 법률혼 부부와 유사한 기본적인 의무 + 추가 선택

일상생활 및 공동거주에 필요한 내용으로 의식주, 자녀 육아 및 교육, 의료, 여가, 보험 등 + 추가: 재산, 상속 등

자녀 : 생후 1개월(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신고 절차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함.

계약혼 법률 규정: 민법 내 특별법 마련

2) 자격: 자발적으로 합의한 성인 남녀, 사회적 정당성(중혼 불가)

3) 계약 변경/종료 : 쌍방 합의, 종료는 일방 파기로도 가능, 신고로 변경

4) 자녀의 법률적 지위: 민법 원용

* 법률혼과의 차이

- 혼인 '계약' 신고 :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계약 당사자 동반 출석)

- 친족관계 형성 : 계약 당사자는 상대의 친족관계에 편입되지 않음, 즉 시가/며느리, 처가/사위 등의 관계 성립되지 않음. (다만 자녀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하게 친족관계 성립)

□ 계약혼의 장점

- 남녀 성인의 독자적, 자율적 혼인의사 존중 & 선택지 다양화

+ 의식적인 계약 내용 (vs. 혼인 법률과 관례에 대한 사전 인지 저조)

- 부부 관계 중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생애 설계 가능

- 혼외자녀의 발생을 감소 및 법적 지위 확보

- 현행 혼인제도에 대한 이의를 부분적으로 해소

예) 법률혼의 독점적 우선성 (vs. 사실상/유사 혼인관계, 동성관계)

- 젊은 층의 출산 기피 요인 일부 해소

경제적(주거/출산/양육/교육) 부담 우려를 혼례비 절감으로

- 저출산 해소에 기여 (예: 프랑스 PACS 효과 등)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 고독 완화

□ 계약혼의 위험/우려

- 이성 관계에만 적용, 성소수자 소외에 대한 저항

- 일반인의 법 정서: 동거혼의 합법화, '부모, 가족' 무시 &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강한 저항 위험

4. 연구 및 토론 계획: 가족친화제도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주제: "저출산 비혼화 시대의 결혼·가족 제도의 혁신 - '계약혼' 제안"

-일시: 2012.12.27(목) 오후3시~6시 / 장소: 프레스센터

-발표: 미래포럼 연구팀

-토론: '새로운 시각과 사회적 파장'의 관점에서

김영철 연구위원(KDI), 공지영 작가(또는 여성주의 문화계 인사 1인)

국회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소속 의원 1인 - 법률 입안 가능성 검토

□ (9/6)회원네트워크 - 1차 기획회의

일시 : 2012년 7월 26일 오후4시~7시

장소 : 유한킴벌리 5층 회의실

참여 : 김태숙 상무, 최광기 대표, 김정신 팀장, 이은희 팀장, 신유미 대리

■ 논의

1. 취지 : 각계 지도층을 재 응집하여 미래포럼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함
(사람중심으로 다시 기획 필요)

※ 회원참여율이 낮아진 원인

- 포럼내용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것 외에 인적자원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인간적인 친밀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부족
- 문국현 사장님 이후, 호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사라짐
- 오세훈, 박원순, 안철수 등 이슈메이커의 부재

⇒ 미래포럼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화려했던 멤버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는 기회 "Home Coming Day - Party"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2. 콘셉트 :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파티
(레지던스 호텔 스위트룸에서의 정장차림이 아닌 편안한 분위기의 자연스런 파티)

※ 회원네트워크 프로그램 정례화

봄 : "밥 한 끼 먹읍시다. (정을 나눌 수 있는 밥, 새 기운을 나누며)"

가을 :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넥타이 풀고 편안한 분위기의 파티)

3. 프로그램

- 일시 : 2012년 9월 6일 (목) 오후 6시~9시
- 장소 : 레지던스 VABIEN (서대문역 이화여고 후문 인근)



※ 38평~60평(1/3거실), 1박 20~29만원(VAT포함)/ 단,6명까지만 입실가능<조울 필요(최광기)

5. 기타

■ 예비 장소

- 최순우 생가(삼청동)
- 마당이 있는 식당
- 고택에서의 하룻밤(북촌 게스트 하우스 같은)
- 김숙기 원장의 작업실(양재동 시립병원 맞은편)
- 양재천 캠핑장(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몸만 가면 됨)
- 박옥희 대표 갤러리 지하(헤이리)
- 은덕원(이선중 교무님 관리)
- 만해 한용훈 생가(마당)
- 윤보선 생가(마당만 사용가능)

■ 차후 일정

7/31까지 : 명단정리 및 주요인물 중심으로 섭외 전략 기획, 바비엥 숙소 9/6 대관가능 파악
8/16이후 : 2차 회의

/끝/

미래포럼 컨퍼런스 기획 미팅 보고

- 일 시: 2012년 8월 2일(목) 오후 7시~9시
- 장 소: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아시안 라이브>
- 참 석: 남승우 공동대표, 조형 공동대표
- 기 록: 이은희 팀장

※ 논의사항: 가족친화제도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주제 선정

1. 미팅제안 배경

남승우 대표가 컨퍼런스 기획 미팅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다. 미래포럼은 '정책 제안'을 하자고 설립 되었는데, 지금까지 가족친화(기업)제도 외에 특기할만한 다른 성과가 없다. 포럼과 워크숍의 내용을 축적하여 제안할만한 정책으로 가공하여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가족친화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하여, 기업조직에서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차원의 근본 원인들을 규명하고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2010년 10월 7일(목)에 열린 제27차 공개 포럼 "저출산,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에서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미혼모지원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많은 토론을 벌였고, 프랑스 '팍스Pacs' 법 등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서 소개되었다. 한국사회에 이미 결혼제도와 가족문화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있고, 젊은이들에게는 비혼화, 만혼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미래포럼이 선진 사례인 프랑스의 '팍스' 법을 연구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수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2. 토론내용

-남승우 공동대표: 프랑스 '팍스 법'의 한국적 수용은 가능하다

1. 한국 혼외출산율과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해마다 얼마나 되는지 조사 바람.

2. 프랑스 '팍스'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의견

1) 취지: 비혼화의 원인 해소(결혼식의 허례와 사치, 사위/며느리가 되어야 하는 과중한 부담 등)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지위 해소

2) 특징: 프랑스의 팍스 혼인은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문화적 수용력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내용들을 수정하여야 한다.

'팍스:시민연대계약'은 사실상 법률혼을 대체하는 '법적 동거'를 뜻하나 '동거'는 한국 사회에 이미지가 매우 좋지 않은 표현이므로 '(남녀신분)계약혼'이라고 명명한다. '계약혼'은 신고/등록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동거'와 달리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회 제도이다. 또한 '계약혼'은 부모가 반대하는 혼인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프랑스 '팍스'와 달리 결혼으로 가는 예비 단계로서, 살면서 부부의 각 친족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하여 선택하는 경우 법률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내용

'계약혼'은 함께 살려는 남녀 당사자의 의지만 있으면 부모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혼인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원하지 않는 상대의 식구들(시집/처가)을 가족으로 맞이할 필요가 없다. 비싼 비용을 들여 혼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고, 혹 혼례를 치른다 해도 주례를 반드시 둘 필요가 없으며, 다만 남녀 당사자간에 '계약혼'이 성립되었음을 구청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팍스>와 마찬가지로, '계약혼' 관계에서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 태어난지 사흘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아이의 법제도적 사회보장 지원을 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어길 시에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한다.

'계약혼'을 신고한 당사자들은 부부가 되며, 법률혼인한 이들과 달리 친족상속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관계의 부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규정하기 위한 특별 민법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는 친족상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들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으며, 법률혼 자녀들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다.

4) 추진체계

사업항목: 미래포럼 만분클럽 연구사업으로 추진

전문연구팀 구성: ('계약혼'의 법제화를 목표로) 젠더법학회 연구자, 사회학자, NGO 관계자 등

-조형 공동대표: 법제화하는 경우 다양한 영역에서 반대 입장이 제기될 수 있어 우려된다

*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제기

'계약혼'을 '남녀관계'에 국한함으로써 혼인제도에서 여전히 동성커플의 경우를 배제함.

'혼인제도'를 유연화하여 미혼모 발생 규모를 억제할 수는 있겠으나 미혼모 문제는 여전히 남음.

'계약혼' 제도의 취지를 출산을 장려로 설명할 때 모성의 전략적 동원,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비혼, 저출산의 원인은 혼인제도의 문제 외에 사회복지제도-보육, 교육, 주택, 의료 등의 공공성, 고용보장 등-의 미비에서도 비롯됨. 혼인제도의 유연화로만 목적을 실현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법은 신설되어야 할 공공의 사회적 명분과 국민적 정서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어려움이 예상됨.

-남승우 공동대표: 법은 중요 문제(저출산)의 해결을 목표로 만들고, 관련 문제들(미혼모, 동거부부 등)은 법이 제정된 후 특별법 부칙으로 만들면 됨.

----- 실무진의 향후 컨퍼런스 준비 계획

■ 가족친화제도 5주년 기념 컨퍼런스 기획(안)

1) 컨퍼런스 기획(안)

-성격: 기 시행된 가족친화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기에는 이미 각종 국책기관의 연구물들이 많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집약하고 토론할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면 본 제도를 시행해온 여성가족부 산하 가족친화포럼에서 추진해도 됨. 미래포럼이 추진하는 컨퍼런스로서의 독자성이 없고 사회문화적으로 제기할만한 화두의 측면에서도 참신성이 없음.

초저출산 해소의 과제를 계기로, 내부에서 제안한 '팍스의 한국적 법제화 및 사회적 수용가능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가부장주의적 혼인제도와 가족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사회적 논쟁의 수면 위로 드러내고 hot한 토론의 기회로 삼는다.

-주제: "비혼화 시대, 가족친화제도를 다시 생각한다"

- 발표: 미래포럼 연구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유러피안 드림, 팩스(Pacs)의 한국적 법제화'
- 토론: 김영철 연구위원(관련 전문가), '초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사회적 파장'
- 공지영 작가(여성주의 문화계 인사), '여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출산 문제와 팩스법'
- 가족친화포럼/저출산고령화포럼 중 대표 1인
- 김용익/남윤인순/김상희/유승희/김희정(보복위/여가위) 중 국회의원 1인, '법제화 가능성 검토'

2) 연구팀 구성 및 컨퍼런스 준비

- 연구주제: 팩스의 한국적 법제화 및 사회적 수용 가능성 연구
- 연구진 구성: 젠더법학회, 민변여성위원회, 공감 등의 여성(주의) 법조계 인사 1~2인
- 가족사회학, 여성학계 전문가 1~2인, NGO 1인
- 언론계 1인(김효선 여성신문사 사장)
- 연구기간: 8월 중순~11월 말 (3.5개월)
- 연구내용: 팩스법의 내용, 성과와 한계
- 한국 20~30대 비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태도 조사연구
- 출산현황 및 유관 데이터 조사(혼외출산율, 고아 및 입양아 비율 등)
- 기타
- 성과발표: 12월 27일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 토론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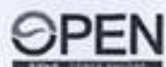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2. 9. 11(화) 14:30		
배포일시	2012. 9. 11(화) 13:30	담당부서	장기전략국 미래사회전략팀
담당과장	임형철 (2150-4930)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2150-4931) 홍기영 사무관 (2150-4932)

제목 :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 부문 중간보고서 발표

- ☐ 정부는 금년 10월 우리사회의 미래 트렌드와 정책추진 방향을 담은 중장기전략보고서를 발표할 예정
 - 이를 위해 4월 30일 중장기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개 작업반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추진해왔음
- ☐ 중장기전략보고서에는
 - ①인구구조의 변화, ②기후변화, ③남북통일 등 미래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트렌드가
 - ①인구구조, ②성장잠재력, ③기후변화·에너지, 그리고 ④제정 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서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담을 계획
- ☐ 첨부하는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은 그동안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서 추가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중장기전략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임

(첨부: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부문 주요내용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

[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부문 중간보고서]

본 자료는 금년 10월 발표예정인 중장기전략보고서의 인구구조 변화 부분에 반영될 내용으로서, 단기간 내 시행되는 것이라기보다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결정·시행될 사항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 9. 11.

기 획 재 정 부
중장기전략위원회

목 차

I. 미래한국의 인구 전망	1
II. 그동안 대책 평가	7
III.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8
IV. 중장기 추진 과제	9
1. 고령사회 노동력 활용	9
2. 적정출산을 확보	12
3. 외국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추진	16
4.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	19

I. 미래 한국의 인구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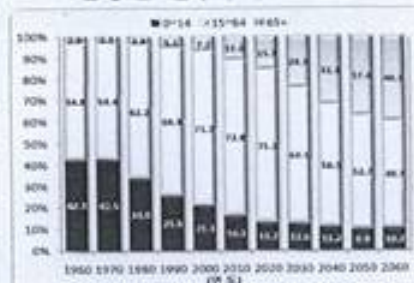
1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존 전망

-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로 인해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 현재 출산율은 세계 222개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11년 1.24명)
 - 생산가능인구 전망(통계청, '11, 만명): ('12)3,656 → ('30)3,289 → ('60)2,187
-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제할 경우, '21년부터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30년에는 노동력이 280만명 부족할 전망
 -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 수 증가율 / GDP 증가율)가 현재 0.29('00~'10년 평균)에서 20년 후에 0.15까지 감소하고, 현재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참가율이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KDI)
- 또한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17년 고령사회, '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 '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4명이 노인이고,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1대 1 부양시대'에 진입
 - 노인 비중: ('12) 11.8% → ('40) 32.3% → ('60) 40.1%
 -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자 수): ('12)16.1 → ('40)57.2 → ('60)80.6
-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어 '40년에는 세계 주요 국가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
 - '40년 중위연령(통계청, '12.6월, 세): (한·일)52.6, (독)50, (프)42.7, (미)39.6

<주요 국가의 고령화 진행 속도>

	도달연도			소요기간
	고령화 (7%)	고령 (14%)	초고령 (20%)	
한국	2000	2017	2026	26년
일본	1970	1994	2006	36년
프랑스	1864	1979	2018	154년
미국	1942	2015	2036	94년

<연령별 인구구성비 전망>



2 인구전망의 새로운 시각

1. 노인 개념의 변화

□ 그 간의 수명연장과 건강개선 효과 등을 반영하여, 획일적으로 65세 이상을 피부양인구로 간주하고 있는 현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해야 할 필요성 증대

○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이 연장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19세기 말에 설정된 노인 기준연령을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

• '11년말 우리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80.7세, 건강기대수명은 71.3세

• 1889년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수급연령을 65세로 책정하였던 당시 독일인의 평균수명은 49세 수준

○ 일반국민과 65세 이상 인구의 다수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

• 국민의 68.3%, 65세 이상의 83.7%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답변('11.6월 보사연)

□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크게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

• '50년 고령인구 비중: (65세기준) 37.4%, (70세기준) 29.7%, (75세기준) 22.1%

• '50년 생산인구 비중: (65세기준) 52.7%, (70세기준) 60.3%, (75세기준) 67.9%

< 고령자 기준 변경시 우리나라 인구 전망(만명) >

고령자 기준	구 분	2010	2030	2050	2010~2050 평균
65세 이상	총인구(A)	4,941	5,216	4,812	5,095
	생산가능인구(B)	3,598	3,289	2,535	3,236
	고령인구(C)	5,452	1,269	1,799	1,227
	생산가능인구 비중(B/A)	72.8%	63.1%	52.7%	63.5%
	고령인구 비중(C/A)	11.0%	24.3%	37.4%	24.1%
7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D)	3,783	3,698	2,904	3,576
	고령인구(E)	361	861	1,430	887
	생산가능인구 비중(D/A)	76.6%	70.9%	60.3%	70.2%
	고령인구 비중(E/A)	7.3%	16.5%	29.7%	17.4%
7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F)	3,939	3,698	3,269	3,878
	고령인구(G)	205	508	1,065	585
	생산가능인구 비중(F/A)	79.7%	77.7%	67.9%	76.1%
	고령인구 비중(G/A)	4.1%	9.7%	22.1%	11.5%

2. 남북한 인구전망

□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이 현실화되는 2030년 이후에는 북한 인력 활용이 주요과제로 대두될 가능성

○ 따라서 미래 북한인구가 우리나라에 미칠 양적·질적 측면 까지 고려하여 인구를 전망할 필요

□ 북한지역 인구를 포함한 인구전망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장래 인구를 전망

① (가정 1) 북한지역이 현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 북한의 출산율은 '10년 2.00명에서 '50년 1.95명으로 소폭만 하락 가정 (통계청 북한인구추계, '11)

○ '50년의 남북한 전체 인구규모는 7,450만명, 인구밀도는 338명으로 개선

• 남한의 '50년 전체인구는 4,812만명, 인구밀도는 483명(통계청, '11)

○ '50년의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4,257만명이 되어 남한만 고려할 때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57.1%)이 4.4%p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30.2%)은 7.2%p 감소

② (가정 2) 북한지역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10년 2.00명에서 일정비율로 감소하여 '45년 1.42명 도달 후 유지 가정

○ ①북한도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¹⁾ 해 왔고, ②독일²⁾ 과 동구권 국가 체제전환시 급격한 출산율 저하현상³⁾ 등을 감안하여 향후 북한 출산율이 남한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전제시

1) 북한 출산율 추이: ('65~'70) 7.01명 → ('75~'80) 3.30명 → ('85~'90) 2.25명

2) 동독의 출산율: ('89) 1.75명 → ('94) 0.8명

3) 소련 붕괴이후 동구권 국가의 출산율 추이('89~'00년):

(체코) 1.87 → 1.14, (헝가리) 1.78 → 1.33, (폴란드) 2.07 → 1.37

- '50년 남북한 생산가능인구는 4,131만명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3.9%p 증가하고 노인인구 비중(31.8%)은 5.6%p 감소
- ③ (가정 3) 북한지역의 현 출산율이 유지되고, 미래 노인개념의 변화를 감안하여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
 - 남한만의 경우보다 '50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60.3→64.0%, 15~69세 기준)하고 노인인구 비중 감소(29.7→23.4%, 70세이상 기준)
- ④ (가정 4) 북한지역의 현 출산율이 유지되고, 미래 노인개념의 변화를 감안하여 고령자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보는 경우
 - 남한만의 경우보다 '50년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증가(67.9→70.2%, 15~74세 기준)하고 노인인구 비중 감소(22.1→17.2%, 75세이상 기준)

< 북한지역 인구 고려시 인구 전망 >

	합계 출산율	2050년의 인구구조			인구 고령화 속도	
		생산가능 인구 규모	생산가능 인구 비중	노인인구 비중	고령사회 진입시점	초고령사회 진입시점
남한인구	('10) 1.24 ('50) 1.42	2,535만	52.7%	37.4%	2017년	2026년
①가정1	('10) 2.00 ('50) 1.95	4,257만	57.1%	30.2%	2021년	2030년
②가정2	('10) 2.00 ('50) 1.42	4,131만	56.6%	31.8%	2021년	2029년
③가정1+고령자기준 70세 이상 적용		4,769만	64.0%	23.4%	-	-
④가정1+고령자기준 75세 이상 적용		5,232만	70.2%	17.2%	-	-

3. 노인빈곤과 인구의 질 문제 등

- 자녀로부터의 부양문화, 주택 등 자산보유 등을 감안할 때 서구적 기준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 OECD 등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고, 연금 등 노후 준비도가 미흡하다고 지적
 - 65세 이상 빈곤율(%), 가처분소득 기준, '11: 한국 45.1, 미국 22.4, OECD 17.1
 -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연금 가입률이 낮고(공적연금 31.8%, 개인연금 15.8%), 연금 순소득대체율(47.5%)도 낮은 상황
- 노인빈곤 문제는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성숙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 증가 등으로 상당히 완화될 전망
 - ① (국민연금)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국민연금수급자 비율이 '40년에는 60%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
 -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비율(%): ('11) 28.2→('20) 36.5→('30) 51.2→('40) 60.6→('50) 66.0→('60) 69.9
 - ②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실시('12.7월) 등으로 퇴직연금은 매년 증가하여 '20년에는 약 200조원에 이를 전망
 - '12.7월부터 신규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 설정하도록 의무화
 - '12.6월 현재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는 369만명, 적립금은 53.9조원
 - ③ (개인연금) 전체가구의 32.3%가 가입 중(적립액 177.2조원, '10년말)이고, 매년 10% 이상 개인연금 가입규모가 증가할 전망
- 그러나 가족해체 현상 심화, 노인 일자리 부족 등에 대비하여 충분한 노후준비 없이 은퇴하는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 필요
 - 독거노인 가구는 2035년에는 10명 중 4명으로 증가할 전망
 - 노인 1인 가구: ('10) 119만명(34.2%) → ('35) 343만명(38.0%)
- 또한 미래 우리나라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의 심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범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인구의 질 관리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비중: ('00) 1.01% → ('06) 1.86% → ('11) 2.8%
 - 최근 결손가구 비율이 증가추세('05) 9.0% → ('10) 9.5%)
 - 범죄 발생 건수가 30년간 약 3배 증가('81) 63만건 → ('10) 191만건)

< 시사점 >

- 고령화가 미래 위험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고령인력 등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인구의 적극적 활용가능성(새로운 개념의 생산가능인구) 등을 감안한다면, 위험요인이 상당부분 완화 가능
 - 활발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 은퇴하는 65~74세 인력이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을 고려하면 '50년의 실질적 고령인구는 22~30% 수준
- 청장년층 인구가 풍부하고 출산율이 높은 북한을 고려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문제가 크게 완화 가능
 - 그러나 북한 인력의 질적 수준, 자본주의 시장 적용의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 문제도 향후 공적연금제도의 성숙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률 증가 등으로 완화
- 이러한 전망을 고려해보면 미래 한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의 중점을 '인구의 양'보다 '인구의 질' 관리에 둘 필요
 -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 가족해체 현상 등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 범죄율 증가 등에 대응하여 인구의 질 유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북한지역 인력이 미래 한국 인구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 필요
 - 과거 동구권 국가 사례에서도 40~45세 이상 인구는 자본주의 경제에 적응하지 못해 허드렛일과 정부보조금 등으로 생활

II. 그동안 대책 평가

- 그간의 인구정책은 기존의 고령자 개념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정책 위주로 접근
 - 출산율 개선과 노후 준비에 대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
 - 합계출산율(명): ('96) 1.66 → ('05) 1.08 → ('11) 1.24명
- 그러나 100세 시대에 맞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진단
 - 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예견됨에도 미래 노동공급 체계 변화에 대한 고려 부족
 - 출산율의 급격한 반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령자 등 유희인력의 활용도를 높여 가야하나, 중고령자(60~64세)의 고용을 기피하는 관행 상존
 - ② 남북한 인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고령화 문제 해소 가능성이나 인구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전망과 대책마련 미흡
 - ③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를 초래한 요인 중의 하나인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고용 등 사회시스템에 대한 고려 부족
 - ④ 국민연금 등을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은 구축해 왔으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는 큰 진척이 없는 상황
 - '11.2월 ~ '11.12월 국회는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기종료로 논의 중단

Ⅲ.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

-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별법상 고령자 기준연령을 수혜자의 건강,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 검토
 - 수혜자의 재산·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수혜 연령의 차별화를 통해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 등 마련
 -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을 하도록 유도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 개편
- 미래 한국의 인력과 외국인을 포괄하는 인구의 질 관리전략을 수립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인구충격에 대비
 - 우리나라의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성공적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 확대
- 빠른 고령화 속도, 북한 인력의 질 등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출산을 확보 필요
 - 풍부한 젊은 노동력이 사회의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적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을 확보 추진
 - 미국은 높은 출산율(2.01명, '09년)과 젊은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인구정책 덕분에 장기 경제전망이 낙관적(Harvard Univ. Williamson 교수)
-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실질적 소득보장과 고령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추진 검토
- 입직 연령을 앞당기고, 기술 진보에 대응하여 先취업 後학습 하는 평생 학습체계 구축

Ⅳ. 중장기 추진과제

1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노동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30~40대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중
 - 최근의 노년층은 과거와 달리 건강상태가 좋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0대 중반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게 되는 상황
 - 우리나라 평균 정년은 57.4세,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 고령자 기준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고 있는 개별법 규정에 따라 일할 의사와 능력을 지닌 경우에도 부양 대상으로 편입

2. 다른 나라의 노력

- (정년제도) 일본, 프랑스 등은 연령차별금지제, 고용의무제도 등을 통해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고령자 기준) 일본은 건강수명 연장을 감안하여 기존의 고령자 기준을 바꾸는 방안 추진 중
 - 일본은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의 대상자를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조정('08)

3.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 방안

(1) 정년제도 개선

□ 현재 일자리에서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점진적 은퇴 방안 등 마련

① 고용의 유연성 보장 등이 전제될 경우, 기업이 노사협의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 등과 연계하여 고용을 연장하도록 유도

- 은퇴 후 재고용, 고령자 적합형 시간제 일자리 발굴 등 병행
- 임금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은퇴전에 제2의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도입

②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정년제도를 개편하고, 단계적으로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일치 추진

- 정년 설정시 국민연금 수급연령 이하로 설정을 금지하고, 기업에게 정년제도 운영의 선택권(정년연장, 재고용, 정년폐지 중 선택) 부여
- 일할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폐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OECD도 최소 정년 연령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정년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제도 폐지 권고('12년 한국경제보고서)

(2) 고령자 기준 개선

□ 미래 우리사회의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비하고, 노인개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고령자 기준의 변경 검토

- 각 법률상의 고령자 기준을 소득,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함으로써 고령자 기준 변경이 초래할 수 있는 취약 계층 복지수혜 중단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 일본은 '08년 「고령자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75세로 조정하되 65~74세 이하는 장애상태가 있는 경우 적용받도록 규정

-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예기간 설정과 연령 조정 소요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 도출

□ 고령자와 관련된 국내 경제·사회통계 등을 개편하고, OECD, UN 등 국제기구의 고령자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노력 강화

< 일본의 정년연장 추진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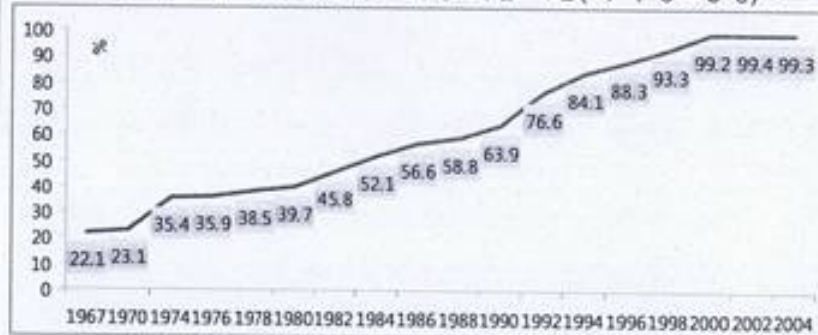
□ ('86년) 60세 이상 정년설정 노력의무 부과

□ ('98년) 기업이 정년을 정하는 경우 60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 '04년 전체 기업의 99%가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

• '11년 현재 60세 이상 정년설정 기업(한국): 42.2%(정년제도 운영 기업)

< 일본의 60세 이상 정년제도 운영 기업 비율(% , 후생노동성) >



□ ('06년) '13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확대 조치 의무화

- 65세까지 ① 정년을 연장하거나 ② 정년 후 재고용 또는 ③ 정년폐지의 3가지 조치 중 택일

- '10.6월 일본 기업 중 65세까지 계속고용을 위한 고용확대 조치를 실시한 기업이 96.6%(계속고용 83.3%, 정년연장 13.9%, 정년폐지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일본 닛세이 기초연구소)

2. 적정 출산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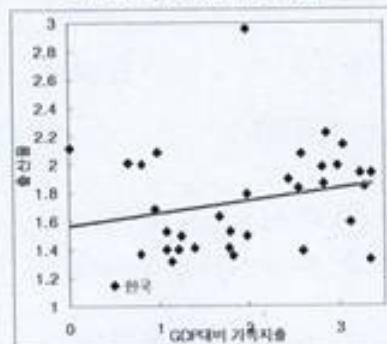
1. 저출산 현상의 원인

- (혼잡한 생태여건) 높은 인구밀도,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문화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만혼, 출산기피 현상 등 발생
 - OECD 국가의 경우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출산율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인구밀도('10)/출산율('09))
 - (한국) 504/1.15, (일) 349/1.37, (덴마크) 131/1.84, (미) 34/2.01, (호주) 3/1.90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와 출산율이 빠르게 떨어진 시기가 모두 2000년대 초반으로 일치
- (가부장적 문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낮은 육아참여나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가 출산기피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시간('09): 남편 37분, 부인 3시간 20분
 -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도 현재 세계 최저의 저출산국가 1~5위 차지
 - 세계적 저출산국가(CIA, World Factbook, 2011): 222위 - 마카오(0.92명), 221위 - 홍콩(1.07명), 220위 - 싱가포르(1.11명), 219위 - 대만(1.15명), 218위 - 일본(1.21명)
- (열악한 양육환경)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 전통적 대가족이 해체되고 부부 중심의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한 보육환경이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작용
- (일-가정 양립 곤란) OECD 최장의 근로시간과 출산·양육에 비친화적인 기업문화 등이 여성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연평균 근로시간('10): (한국) 2,193시간, (OECD) 1,739시간
 - 출산·육아휴직시 경력단절, 직장 내 야근·회식문화 등이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일과 출산 중 양자택일 요구

2. 적정 출산을 확보 방안

- ◇ 가족 비친화적인 기업문화, 경쟁중심의 혼잡한 사회생태계 등 우리사회에 낮은 출산율을 가져온 사회문화적 요인과 시스템 등의 개선에 중점
 - 영국의 인구학자 David Coleman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의 '문화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
 - 일본도 최근에는 기업의 장시간 근로·야근문화 개선에 집중
- ◇ 출산·양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적정규모의 투자도 필요하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지원 강구
- ※ OECD 국가들의 가족지출 수준과 출산율 간에 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예외적 국가도 다수 존재

<가족지출수준과 출산율>



• 자료: OECD SOCX

<예외적 국가들>

국가	GDP대비 가족지출 (2007)	출산율 (2009)
헝가리	3.34%(2위)	1.33명(31위)
독일	1.83%(18위)	1.36명(32위)
미국	0.66%(32위)	2.01명(7위)
캐나다	0.96%(29위)	1.68명(18위)

[1]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문화 조성

-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육아책임을 덜어주고, 양성이 함께 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
 - 장기적으로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
 -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 학습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아버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일정 기간의 '아버지 휴가' 부여
 - 영국은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남편에게 2주간 유급 '부성휴가' 제공
- 양성평등 문화·가치관 확산을 위해 아버지 교육을 강화
 - 초·중등학교 교과교육과정 개정시 아버지 육아책임에 대한 내용 강화
 - 평생교육 차원에서 자녀양육 방법을 코칭받을 수 있는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2]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선택권 제고
 - 획일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미흡 등으로 인해 부모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
- 장기적으로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 의무화, 평가결과 공개, 서비스 수준을 등급화하여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 추진
- 종일제 이외에 시간제 이용, 일시보육, 돌봄서비스 등으로 자녀양육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는 획일적 종일제(12시간)로만 운영되어 미취업모의 경우 불필요한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고, 취업모는 야간보육 이용 곤란

- 장기적으로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50%(이용아동수 기준)까지 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
 -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11%,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은 2.2% 수준
 -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시설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시설을 선정하여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시설 기준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 취약 계층과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국가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
 - 민간어린이집의 진입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도시 지역, 중소기업 등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에 우선 설치
 - 장애아 보육 기능 등 국가 보육책임이 더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3]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

- "일과 가정, 일과 생활의 양립(Work-Life Balance)"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근로문화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기업의 자발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증기준에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유연근무 도입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입찰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서 선도적으로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연가사용 등을 활성화
-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자녀 연령 기준으로 만 6세까지인 육아휴직 이용기간을 장기적으로 확대
 - 현재는 공무원만 8세, 민간은 만 6세까지 육아휴직 가능

1. 현황과 문제점

-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하여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력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11년 말 약 140만명 수준
 - 전체 인구대비 비중도 '01년 1.2%에서 '11년 2.8%로 증가
 - 앞으로도 글로벌화와 인구변동으로 인한 국내 노동시장변화에 따라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외국인력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는 인적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 전문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 비전문 외국인력은 수요예측을 통해 필요최소한으로 도입하되 국내 인력과의 일자리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한편,
 - 특히, 외국인력 도입은 잠재적인 갈등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회통합 노력이 수반될 필요
- 기존의 정책들은 단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 문제점을 내포
 - (전문 외국인력)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유치하지 못했고, 도입한 전문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도 미흡
 -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실질적 수요조사보다는 정책방향에 의해 결정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고려되지 못함
 - (사회통합) 국내 동화 중심의 지원으로 내·외국인간 소통이 부족하고 외국인력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함

2. 외국인력 운용과 사회통합 방안

(1) 전문 외국인력 유치 촉진

- 유학생 유치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인재의 한국 유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 해외 유학생 유치기관*의 기능과 정책을 검토하여 정부장학생 유치를 전담하는 국립 국제교육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폴브라이트재단(미국), Campus France(프랑스), 영국문화원 등
 - 정부초청 장학생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인구, GDP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인 1,600명까지 확대 (현재 미국 매년 약 8천명, 일본 매년 약 5천명, 한국 매년 4백명 수준)
 - 한국어, 기초 교육수준 등을 검증하여 유학 후 우리나라에 기여하고 우호세력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를 선별하여 유치
 - 장학금 지원 외에 인턴십, 일자리 매칭 등 노동시장과의 연계 강화
- 전문성과 지식수준에 따라 VISA 유형을 세분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
 - 최고급 전문인력은 출입국시 서류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 부여
 -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방식의 포인트제도* 운영을 검토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 부여와 복수국적 허용 확대를 추진
 - 영국의 예(Tier1제도):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등급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한 뒤 입국 전 근무처 확정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

(2) 비전문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 결정

-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의 적정 도입규모 결정
 - 산업경쟁력과 내국인 근로자의 노동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별·국가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 병행

-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고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수급노력 강화

- 업종별로 실질적인 노동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노동시장테스트 제도* 마련

- 내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우선 추진하고, 구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외국 인력 채용에 앞서 내국인 채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제도

[3] 문화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 미래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의 주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성을 기반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자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

- 국내에서 외국인 등이 받는 차별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법적 제도개선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외국인이 각종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국어로 방송하는 다문화방송 활성화

- 외국인 등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융화하기 위해 체험 중심의 커리큘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성 교육 확대

- 다문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상호 문화교류·협력 강화, 이주민의 문화표현 기회 확대 등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추진

- 방송과 문화예술콘텐츠 등에서 타문화 존중과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안내서(Guideline) 제작·보급

- 지역 도서관, 문화원 등을 활용한 쌍방향 문화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사회-이주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사회통합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국내 정착지원 강화

- 통합프로그램 다양화와 참여자 혜택 부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참여자에게 체류편의, 취업교육, 일자리 매칭 등을 제공

- 개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사회통합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향후 공적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비율(%):
(‘10) 22.4 → (‘20) 36.5 → (‘30) 51.2 → (‘40) 60.6 → (‘50) 66.0 → (‘60) 69.9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제구조화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보장 강화와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제고할 필요

- OECD는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개편안을 마련하여 지급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높일 것을 권고(한국경제보고서, ‘12.4월)

-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의 해체, 젊은 세대의 부모부양 기피로 노인들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의료 등에서도 어려운 상황

2. 다른 나라의 노력

- (공적연금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연금 혜택을 강화(핀란드) 하고,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부분연기제도* 시행(독일)

- 수급자가 연금액의 일부만 지급받고, 일부는 이연할 수 있는 제도

- (교육·여가 활용) 선진국은 민간-정부-대학이 연계하여 고령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등 활성화

- 미국의 ‘담당 없는 대학’, 독일의 ‘서민대학’, 이스라엘의 ‘만인대학’ 등

-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일본, 영국 등은 고령자를 고려한 사회적 기준 도입과 고령자 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 추진

-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편한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영국, 일본) 하거나,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주행 실습 등 강화(미국, 일본)

3. 노후생활 지원 방안

(1)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 제구조화)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개편

- 2030년에는 GDP대비 1.70%(61.4조원), 2050년에는 GDP대비 3.06%(217.8조원)가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될 전망

□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 장기적으로 고령자가 노후소득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현행 국민연금 연기제도* 개편 검토

- 현재는 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연금 수령액 전액을 연기하면 연기 1년당 연금액의 7.2% 가산된 금액 매월 지급

-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액의 100%를 연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연금액 중 일부(50%, 60%, 70%, 80%, 90%)에 대해서도 연기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 60세에서 65세 사이에만 연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70세 이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

□ (공적연금 개편) 구체적인 제구조화 방안은 '13년 하반기 완료 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

- 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분야에 대해 2060년까지의 재정지출 규모 등 추계 중('12~'13년 하반기)

(2) 고령기 평생교육과 노인 일자리 확대

□ (평생교육 지원체제) 입직연령을 앞당기고, 기술진보에 대응하여 은퇴 후 새로운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체제 마련

- 전문대학 등을 지역 내 고령자 평생교육 중심 기관으로 육성

- 장기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방안 검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설치·경영에 사용하도록 규정

□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확충) 자신의 경험·지식·재능을 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마련

- 민간·공공분야의 퇴직전문가가 보유한 경험·지식·재능의 수요·공급에 대해 조사 실시
- 퇴직전문가가 보유한 경험·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Pro Bono(전문가 재능기부) 일자리 확대

(3) 고령친화적 생활여건 조성

□ (근무환경 조성) 은퇴 후 고령자가 창업·재취업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 특성에 맞는 근로 환경 조성

- 고령자가 PC·모바일기기 등을 활용하여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Smartwork) 활성화
-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인 스마트워크센터의 확충, 고령자 맞춤형 재택 취업지원 및 모바일 서비스 보급 등 추진

□ (교통기준 재설정)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수단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호체계, 교통시설·수단의 디자인 등 재설정

- 보행과 교통이용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기준 재설정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기준)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 (주거기준 마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편의를 위해 고령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6 발효)」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조기 제정 추진

출장 / 미팅 결과 보고서

사 업 명	AP 지원사업 온라인커뮤니티 플랫폼 구축관련 자문회의	담당자	박금희
일 시	2012. 7 23(월) pm2:30~3:30	결재자	
장 소	{주} 블로터앤미디어		
참 석 자	이희욱(블로터닷넷 편집장), 박금희		
주요내용	● AP사업의 아모레-한국여성재단-지원단체를 묶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슬로워크를 통한 카페 개설을 준비함. ●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사업 운영방식 및 AP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방식에 대한 자문 요청 ● 슬로워크 제시의 카페운영의 적절성 평가 요청		
사업결과	● 사업의 특성 및 의도를 담기에 카페 방식은 폐쇄적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평가됨. 외부의 검색 노출도 어려움. ● 이희욱 편집장은 블로그 방식의 플랫폼 구축을 제안함. 좀 더 개방적이어서 SNS의 활용에 적합하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과의 공유가 편리하여 기능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함. ● 문제는 콘텐츠로 지속적이고 부지런한 관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함.		
제안사항	● 개설 전단계로 카페보다는 블로그, 특히 T-story 이용을 고려해볼만 함. ● 보다 적극적으로 페이스북도 고려해 볼것을 제안함		
담당자 의견	● 사업계획에 준하여 자연되는 것은 우려이나, 보다 편리하고 많은 이들이 접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권한의 문제를 고려, 여성재단 블로그와 별도로 개설하여 링크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비고	● AP 지원사업 담당자 및 기획홍보팀과의 협의 예정		

RE: 토론회 자료집과 단체별 입장서 작성 참고자료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보기

보낸사람 : 전현경 12.08.08 16:35 수신차단

자료집 내에 전현경 발제문이 있고,
발제문과 토론회 녹취록 참고하여 참고용 자료 다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From: 오연경 [mailto:auyoen@civilnet.net]

Sent: Wednesday, August 08, 2012 4:02 PM

To: 강선미; 강혜림; 김미란 여연; 김희정; 명진숙; 문은정; 박영선; 염형국; 이은희; 전현경; 정현곤; 주현정; 최현모; 한상민; 황선미

Subject: 연대회의입니다. [기부금품법 5차회의록초안]

안녕하세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연경입니다.

어제 모두모두 수고많으셨습니다.
토론회가 잘 되었다는 평가가 많네요. 환상의 팀인가요^^

어제 잠깐 가졌던 회의결과 공유합니다.
짧아서 첨부 안하고 아래에 붙입니다.

그나저나 저희 연대회의 운영위원회가 22일로 정해졌다네요.
21일 운영위를 할 줄 알고 회의를 22일로 잡았었는데....
운영위 전에는 유체이탈 상태일 거라서...
22일 회의를 제가 없이 해도 될런지, 옮기는 것이 나올지는 의견을 좀 주세요.

어제 토론회의 결과를 받는대로, 공지는 따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 공지 전에 수정이 필요할까요? 그럼 공지 내용을 먼저 공유해야겠군요.

27일 간담회의 정확한 명칭을^^ 부탁드립니다. 그 긴 워딩을 단어 세개만 적어봐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KTV에서 중계한다는 사실은 어제 제가 우이동에 박혀 MT를 가장한 회의를 하고 있었기에 너무 늦게 보고, 본 후(밤 11시 경...)에는 이동중이어서 공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기부금품법 5차 대책회의 회의록초안

- 일시: 2012. 8. 7.(화) 13:30 여의도 7gram 카페
- 참석(10): 최현모(인권재단사람), 김미란(여성민우회), 한상민/문은정(녹색연합), 전현경/황선미(아름다운재단), 염형국(공감), 이은희/명진숙(여성재단), 오연경(연대회의)

□ 논의사항

1.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간단 평가

- 온라인 기부 플랫폼의 입장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
- 수혜자에 대한 입장도 반영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부금품법이 기부금품모집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수혜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나,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이라는 의견.
- 단체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재단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다를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 등록제한이나 목적제한이 규제를 만들고 복잡하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쪽은 같은 입장이라는 의견.
- 토론회에 참석한 행안부의 태도는 시민사회가 뭐라하든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므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

2. 행안부 기부금품법 개정안 입법예고(8.3) 관련

- 이찬열 의원실: 행안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줄 알고 있다. 통과될 여지는 많지 않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으며, 심의일정이 나오면 각 단체가 입장을 표명하면 되겠다.
- 진선미 의원실: 대체입법안과 관련하여 방향과 맥락을 잡아주면 법제처에 의뢰하여 법안을 구체화하겠다. 완벽한 법안이 아니어도 된다.

□ 결정사항

1. 각 단체는 각각 행안부에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 개정안에 대해서는 토론회의 전현경 간사 발제문을 참조할 것
- 대상: 토론회 참가단체, 재단, 연대회의 소속 단체
2. 위 의견은 행안부에 보내면서 동시에 연대회의에도 보내 기부금품법 대응기구에 취합한다.
3. <기부금품법 개악 대응과 향후 개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시민사회 대화마당>을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2012. 8. 27(월) 오후 3시 아름다운재단
 - 대상: 기부/ 재단/ 어드보카시 단체 약 30개
 - 취지: 시민단체 내의 기부금품법 논의 활성화와 행안부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대책기구 구성
 - 내용: 기부금품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기초발제(박영선, 전현경)와 향후 대책 논의
4. 위 내용을 토론회 결과와 함께 공지한다.(연대회의)

□ 다음회의

2012. 8. 22(수) 10:00 참여연대 [시민사회 대화마당 준비 점검 회의, 대책회의 참여자 대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오연경

조직국장

T. 02_734_3924

M. 010_3231_1995

F. 02_6280_3924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5번지 2층 (120-012)

auyoen@civilnet.net | www.civilnet.net

꿈을 꾸듯 살리라. 上善若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만, 즐기며

일반 첨부파일 2개(11.50MB) 전체저장

파일 저장시 자동 바이러스 검사 (압축 ZIP파일 제외)

기부금품법자료집20120807.pdf 11.49 MB

PC저장 | 클라우드 저장 | 삭제

입장서참고용_기부금품법의 문제점.hwp 18 KB

뷰어로 보기 | PC저장 | 클라우드 저장 | 삭제

일부 이미지 또는 태그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하기 | 원문다운로드

상세설명

인사말

이시재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

이런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에 참여에 감사드리고 환영한다. 이 행사는 국회 이찬재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에서 마련해주셨다. 또한 발제자로서 세분의 전문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시겠다.

현행 기부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19대에 입법예고 되었다. 기존의 기부금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기부분화가 확산되고 있어 현행 기부금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부금법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저해하며 시민사회 활성화 저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지원 시민단체에 줄었다. 돈을 가지고 시민사회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러한 기조가 새로운 기부금법에도 관철되어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에는 기부금을 모금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들어있다. 이러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기초로 살아가는 시민단체에서 보면 시민사회 활성의 큰 저해야 될 수 있다. 지난 25년간 시민사회가 발전했고 이것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정부도 발전할 수 있고 기업도 시민사회 통제 하에서 더 건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기부금법이 단순한 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시민단체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기회에 좋은 입법이 됐으면 좋겠다. 시민단체에서는 논의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회에서 다루고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19대국회에는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많다. 분발해야한다. 이 자리는 시민단체가 노력해서 만들었고 두 분의 의원들의 도움이 있었다. 기부금법 제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선미 의원 :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입니다. 오늘 오시지 못했지만 이찬열 의원과 제가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있고, 이 사안이 행안부 소속이다. 지난 해 입법예고를 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인 것처럼 포장되었지만, 현행법 보다 오히려 시민사회단체를 억압하는 개악이다.

7/24 업무보고를 받았고, 당시 기부금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고, 장관도 문제가 있으며 수정하겠다고 했다. 8/3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지엽적인 문제만 수정되었다. 보다 더 건강한 기부문화가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 보다 나은 입법안으로 더 나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힘쓰겠다.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병선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주제에 대한 관심이 첫째고 두 번째는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의원의 인품에 대한 믿음이다. 이찬열 의원은 기부문화를 넓히는데 어울리는 가훈과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진선미의원은 민변의 여성인권위원을 하시고, 기부문화를 정착, 확산시키기 위하여 법적 정리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품격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는다.

한국의 기부문화가 품격있는 문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문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기부가 이뤄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발제>

박영선(사회) :

인사말속에서 취지나 다 나온 것 같다. 참여하는 사람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겠다. 이 토론회를 준비할 때만 해도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전이었다. 현행 기부금품법을 중심으로 발표 준비하였다. 첫 번째 법리적으로 헌법에 입각해서 법리에 대해 얘기해줄 박경신 교수, 두번째 중요한 모금모집자. 현장에서 바라본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간사, 해외사례를 양용희 교수가 발표하실 것이다.

박경신 :

기부금품 모집법에 가장 큰 문제는 기부목적의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부목적의 열거해서 한정해서 그것 외에 목적으로는 기부를 받지 못한다. 물론 폭이 넓어서, 대부분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허용된다고 안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열거를 해놓은 이상 기부를 기부모집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적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의 재량에 의해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 이것은 기부모집행위에 위축효과를 가져오고 실제로 기부목적 때문에 기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존인물로 한 달 전에 조선중앙통신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김정일 사랑한다고 써서 국가보안법 찬양의무 조항으로 구금 되고 지금 기소되어, 재판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증인으로 증언했습니다만 그런 분은 기부목적의 제한이 어떻게 악용되냐면, 그분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사진관을 운영한다. 사진관 운영목적으로 기부를 받는데 그렇게 기부 받은 것으로 산 컴퓨터로 리트윗했기 때문에 불법목적의 기부인 것으로 되어서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지 항목만 두고 있으나 범위가 너무 넓다. 영리적 정치적인 코에걸면 코걸이 될 정도로 수많은 기부행위 포함한다. 실제로 당장 규제기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규정할지 모르는 기부행위들이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수많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를 돕기 위한 모금도 1년을 다 합치면 천만 원이 넘는데 행정청이 언제든 정치적이라고 금지할 틀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어떤 기부행위가 법으로 허용한 기부행위에 포함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부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다른 나라에도 있으나 이는 기부를 빙자한 사기행위를 막기 위함이 지 기부목적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청에 재량에 따라 법으로 정한 기부목적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한 계속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독소조항이다.

또 한가지는 기부모집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 기부를 받으러 길에 나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올리거나 집단 메일을 보내는 등 기부를 모집하는 행위는 표현행위이다.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은 소비행위이다. 뭔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비해주길 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금품법모집법은 표현을, 이러이러 한 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권고하는 것을 막고 있다. 기부모집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정치적 토론을 하

는 것은 아니다. 광고도 상업적 행위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기부금품법을 제한하는 모든 법은 사전검열금지라든지, 견해차이에 따른 차별 금지원리 두 가지 원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기부모집행위는 돈을 받는 물리적 행위를 동반하므로 표현자유 밖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은 기부금품법의 입법목적은 돈 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돈을 달라고 할 때 거기에 허위가 있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품수령의 규제가 아니다. 광고는 상업적 거래의 권고이다. 실제로 상업적 규제 자체가 불법이라면 금지하는 법이 있을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하고 계좌번호만 알면 돈을 집어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규제하는가? 기부 표현을 금지하는 법인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기부 모집행위를 표현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헌법적 표현이 가능하다. (자료집 20쪽)

기부금품모집법은 돈을 수령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고 표현을 자유를 규제하는 법이다. 말은 등록제이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청에 상당히 많이 있다. 등록제이지만 실제로 허가제를 기능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다른 항목에 따라 등록을 받아준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 기부를 허용하는 11개 항목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는 항이 있다. 12번째 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 허용범위는 무한대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인정해주면 되는거다. 이런 식으로 행정청이 표현에 대해 이것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21조를 위반한 규제가 된다. 이것과 같은 것이 2010년 말에 야간 집회금지 법에 있다. 신고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다 못하게 해야지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고 없고 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7명이 위헌판정을 했다. 금지하려면 다해야지 왜 경찰에 허가권을 주나. 여기에서도 대통령에 권한을 준 것은 같은 맥락으로 사전 금지 위반한 것이다. 목적을 정한 것 자체가 문제다. 어떤 것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 영리 정치 종교 다 그 자체로는 불법성이 나타나있지 않는 행위이다. 그런 목적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타인에게 해악이 명백한, 이런 행위가 금지되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 나타난 금지항목 중 국가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치적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 원리 위반이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줄 때 자기에게 유리한 표현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은 국공립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내줄 때 정부에 유리한, 정부를 찬양하는 그런 용도로만 허락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금지하는 판례들 미국에서부터 확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행정법에 부당결부금지를 통해서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원리이다. 오세훈 시장 때 이런일이 있었다. 1급장애인들이 서울 시청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사전신고 안 해서 불법시위가 되었다. 불법시위 단체에 지원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다. 불법시위는 현 구조상 경찰에서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 시장이 불법시위를 했으므로 지원 중단 하겠다해서 바로 중단되었다. 다 같은 불법시위인데 정부의 복지 혜택의 확장을 요구했다 해서 그 사람에게만 불법시위 조항을 적용해서 지원을 끊는다고 하면 이게 차별금지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이 위헌한거다 해서 규제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위헌한 것을 누구에게는 허용하고 누구에게는 허용을 하지 않는다.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결국 국가 세금을 들여서 국민의 사상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현경 :

기부금품법은 2007년에 한번 개정이 됐다. 개정안 회의에 다녀온 선배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난해해서 현장에서 준용이 불가능했다. 시민사회에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받아들였나 했더니 어차피 아무도 못 지킬거라는 것이었다. 기부금품법이라는 것은 회원이 아닌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집하려고 할 때 적용되는 법이다.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부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법률로 가면 홈페이지에 기부하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기부버튼은 기부요청행위이다. 기업과 1억, 2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누가 먼저 제안한 건지 헛갈리는 경우가 있다.

기부 등록의 실행과정에서 이 법(기부금품법)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등록하는데 2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사들의 본적지에 모두 연락을 해서 범법자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빨리 모금이 진행된다. 확인이 끝나고 등록이 되고나면 모금이 끝나는 경우가 있다.

또 문제는 모금과 사용이 연간단위로 끊어져 있다는 것이다. 큰 프로젝트의 경우 모금이 1년으로 끝나지 않다. 고액모금의 경우 1억을 내고 10년간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모금이 몇 년에 걸쳐있다. 고액모금은 여러 해 동안 써야하는 것도 있다. 이전까지는 부득이하게 법을 못 지켰을 때에도 절차상 위반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런데 올 초 법인세법이 바뀌어서 기부금품 모집을 위반하면 지정기부금단체 취소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강화도 필요하지만 준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되어야 한다.

현행법의 문제점은 나쁜 의도는 없는데 현장에서 이 법을 준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자체수입사업을 가진 곳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준용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큰 단체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단체마다 해석과 기준이 굉장히 달랐다. 일반적인 기준이 없어 단체마다 자의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이 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체 입장에서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체들이 정부, 기부자, 시민들에게 의무를 수행하면서 건강한 체제를 만드는 것이 취지인데, (행정청이) 해석을 현행단체에게 넘긴 것이다.

제작년 결식아동 관련 예산이 0원이어서 여론이 일어난 적이 있다. 트위터에 우리가 밥을 먹이자라며 어떤 분이 아름다운재단의 후원계좌를 공개했다. 2일 만에 천만 원이 모였다. 얼른 등록을 하기 위해 서울시에 연락을 했더니 일단 등록을 하는 동안 모금을 중지하라고 했다. 모금한 돈은 일단 돌려주라고 했는데 실제 불가능하다. 홈페이지에는 계좌번호를 내릴 수 있지만 에스엔에스에서 돌고 있는 트윗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할 수없이 돈 낸 사람을 회원등록하도록 유도했다.

이 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적용을 호의적으로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기록으로도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때는 서로 취약하다. 매번 이 법을 지키고 있는 단체도 해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 법은 누가 보더라도 규칙에 따라 잘 되고 있다고 보여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네거티브로 변화되는 것 자체는 바른 방향이다. 문제는 금지항목 4개가 해석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가장 큰 우려는 대중 온라인 모금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사용연한도 문제이다. 사용연한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모금한 금액을 2년 이내 사용하도록 했는데 세법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나눔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나눔관련정책은 나눔문화위원회 설치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나눔문화위원회가 나눔단체를 취소할 권한을 갖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어려움은 현재 기부단체가 행안부의 관리는 받고 있고, 기재부에 제출해서 검토 받고, 국세청에 공시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기부금품모집법으로 서울시와도 연관을 맺는데 나눔기본법이 생기면 보건복지부와도 해야 한다.

나눔기본법이 건별 등록이 아니라 단체 등록을 기본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만 우려스럽다.

현재 기부금품모집법은 1949년 만들어졌고, 전신은 일제 때 만들어진 규칙이다. 그때는 비영리단체라는 시스템이 없었다. 지금은 공인된 비영리단체가 행정청의 관리는 받는 시스템이 안정된 상태다. 기부금품법이 관리하는 규정이 더 약해져야 한다.

양용희: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했다. 선진국의 기부관련 법조항은 연방법 등 다양하다.

기부선진국에서 보는 것과 우리나라는 다른 점이 좀 있다. 과거 논쟁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부모집을 관리하는 행정청과 기부 단체 간의 갈등이다. 행정청이 기부 행위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부의 자율성, 행복추구권 등이 논란이었다. 외국의 법을 보면 기부금관련법을 개정할 목적이 나와 있는데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 법 제정의 목적은 기부자를 위한 것이다. 기부자를 위한 목적은 불법모금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기부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몇가지 살펴볼 것이 있다. 정부의 기부금 관련 정책이 기부문화, 모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세 제도에 따라 기부문화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부정책에 따라 기부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기부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기부나 세금이나 이를 내는 주체는 시민이고 이 목적은 공공을 위한 것이다. 기부를 하는 사람은 세금을 더해 자발적으로 더 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정된 사회로 가는데 동참하고자 했을 때 국가나 행정부처, 시민사회가 이를 격려하고 활성화 해야 한다.

세 번째 기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했느냐 최근에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선진국의 기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의 기부금 관련법, 국세청 규정 등에 의해 이뤄진다. 행정청 재량에 의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모집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하고, 기부자의 기부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와 다른 것은 민간이 기부금 모집과 사용에 대한 자율적인 원칙, 기준이 활발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기부금 모집 전문가 모임도 있고 이를 감시하는 민간단체도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미국의 경우, 50개 중 40개에서 기부금모집에 관한 법을 가지고 있다. 200개 기초지자체가 조례를 가지고 있고, 기부금모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부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만 모금이 가능하다. 정부부처에서 판단여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호주 등은 그 단체의 공익성을 판단한다. 우리나라는 자율적인 모금행위에 있어 법적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우리나라는 법적인 자격을 갖기가 힘들

다. 여기서부터 민간이 기부모집이 힘들다. 기부금모집을 하는 주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에서 등록을 심사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엄격하게 법이 이뤄지고 있는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은 기부자 관점에서 법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기부가 중요한 것은 세금과 달리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차원의 기부문화조성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은 모금하는 사람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검토하고 준수하고 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금단체의 단체장만 등록하는데, 외국은 모집자 한명한명 등록하게 되어있다. 기부금모집대행 에이전시도 활성화되어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규정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단체가 사단법인을 만들기가 쉽지않다. 주무관청에서 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선진국은 기부자의 뜻이다.

<토론>

유욱 :

박경신 교수의 헌법적인 관점 경청할 만한 내용이다. 헌법적인 관점에서 기부금품법이 더 깊게 논의되길 바란다. 전현경간사님은 발제는 실무적으로 기부금품법의 문제를 알 수 있었다. 실무를 어떻게 법에 반영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실무 문제들이 법안으로 가기까지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정리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 토론회가 좋은 기회가 되서 체계적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양용희 교수의 발제에서 외국단체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감명적이었다. 기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최소한의 관리와 감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대안이 나와야 한다. 기부금품법만이 아니고 기부문화 전체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기부금품법에 한정될 필요가 없다. 기부와 관련된 법이 기부금품법 뿐만아니라 20개 가까운 법이 있다.

전현경 간사의 발표에 따르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하는 단체가 1%밖에 안된다. 나머지 99는 어디 갔는지 전체 그림에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아젠다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세제가 중요한지, 등록허가가 중요한지, 자율성이 중요한지..기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오늘 다른 부분들과 안다룬 부분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를 총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거버넌스도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거버넌스 구조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구조로 가는 것이 최적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눔기본법이 아직 안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면 외국사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사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과 관련해 이런 부분을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재능기부로 연결시키든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기부금품법에서 모집비용을 15%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용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모금 중계하는 곳은 괜찮지만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일이 불가능, 이 부분에 관해 정리가 필요하다. 민간이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각 분야의 연구진이 모여 대안을 만들자

박인용과장 :

입법기간은 의견 수렴하는 기간이므로 잘 수렴하겠다. 발제내용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었다. 헌법적 시각, 현장경험도 제도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 여러 의견들 수렴하고 자문 받아서 마련하겠다. 입법추진안 만들고 있는데, 행안부의 추진 기본 방향은 모든 국민들이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속기누락)

정부정책 찬반시 모금금지 항목을 두고 우려를 하는데 정부입장에서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모집활동이나 갈등 조장 할 수 있는 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의견수렴이 필요하겠다..

(속기누락)

모집한 기부금사용제한, 행위 검사에 대해 기부자 측면에서 반영되어있지 않나

(사회자 추가질문)

-공청회 계획이 있는지 : 지난 해 토론회를 거쳤다. 필요하면 추가로 하겠다.

-나눔기본법의 입법목적 등 행안부는 어떻게 보는지 : 복지부에서 초안 정도로 알고 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되면

정유신 :

2007년부터 기부금품법을 등록하는 일을 맡고 있다. 며칠 전 발제문을 받고 박경신 교수의 발표문을 보고 어려움을 느꼈다. 법적지식이 없기 때문. 오늘 다시 설명을 통해 큰 인상을 받았다. 지금 법의 문제점은 행정청의 재량권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부행위가 위축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기부모집의 불법성을 감시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하나 그 행위자체를 할 수 있느냐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 기부금품법에 대해 본의 아니게 작은 단체의 노고를 듣는 일을 많이 했다. 작은 단체에서 이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를 하는데 얘기를 나누면 우리는 못하겠네요 하는 경우가 많다. 작은 단체가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 안에서 15% 규제는 모금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되어서 작은 단체에는 걸림돌이 된다.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단체의 해석이 다른데 이를 규제하지도 않는다. 월드비전의 경우 변수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가 신문에 났다든지 하는 경우 예측하기 어렵다. 천만 원 이하는 등록하지 않는데 갑자기 천만 원이 넘어서 등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단체는 개별 모금으로 생각하는데 행안부는 비슷한 경우를 하나의 모금으로 해석한다.

에스엔에스모금의 사례를 들면, 어느 컨퍼런스자리에서 한 외국인이 질문을 했다. 그 사람은 아프리카의 세 나라를 여행하다가 그 곳을 돕겠다고 활동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금을 한다. 한국에도 에스엔에스를 통해 모금을 중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경우 모금중계하는 사람이 기부금품법 모금행위에 포함되는지 물어왔다. 에스엔에스는 한국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에 여러나라 월드비전에 관계된 나라에서 모였다. 법령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가국 모두 법령으로 인해 위축되는 경우가 없었다. 한국의 경우를 이해하지 못했다.

앞으로 모금의 새로운 플랫폼은 한국에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금이슈가 국제적인 경

우가 많다. 새로운 법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해피빈 이경현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고 했을 때 온라인 에스엔에스에서의 모금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진 법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자체를 통한 모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할 단계이다.

기부활성화를 위한다면 기존 기부금품규제를 왜 얘기하는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규제는 폐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기업에서도 홍보의 일환으로 모금을 갈아하기도 하는데) 기업은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기업이 모금을 악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비영리단체도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으므로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법안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오디에이 박원상 :

기부금품법을 개정하면 결국에는 누가 좋아지는지 묻고 싶다. 기부자인지, 행정청인지, 모금단체를 위한 것인지. 결국에는 기부를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좋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부족한 것 같다.

-다음 욕심나

해피빈은 기관으로 되어있고, 다음은 기업의 사회공헌 서비스로 되어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기부금이 적지 않다. 기관이 다음을 통해(플랫폼을 통해) 천만 원 이상을 모금했을 때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모금등록을 모금을 제안한 네티즌이 해야하는지, 플랫폼을 제공한 곳이 해야 하는지, 최종 수행하는 기관이 해야 하는지

요즘 소셜펀딩이 있다. 어떻게 보면 모금이 될 수도 있고, 투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기부금품법에 해당되는 것인지

-서현 교수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다. 법조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기부모집기관이 투명하지 않다는데 있다.

<발제자/토론자 응답>

(속기록 누락)

박경신 :

투명성문제가 기부에 대한 가장 걸림돌이라는 말에는 공감한다. 기부권고를 받을 때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투명성이다. 중요한 것은 행정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면세와 모집은 완전히 이원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정치행위의 면세규제조항은 기부행위를 막기 위한 법이 아니다.

투명성은 기부모집자 등록제로 가면 해결될 수 있다.

정유신 :

행안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결실이 법제로 나와서 기관이 잘 되면 수혜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기부는 국가의 일을 대신하는 거다.

사회자 :

기부금품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 될 수 있는데, 오늘 토론회는 기부 모집자 입장에서 기부행위의 자율성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었다.

*마무리 토론 녹취록 참고 추가해야 함.